

1.1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변경건

✓ 신경차단술 수가 산정방법을 통합 정비하고 산정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.

-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 기재, 1일 최대 수가 산정범위, 부신피질호르몬제 실시 간격 추가)

변경된 보험급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?

변경전	변경후
<p>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,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 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-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%, 15회를 초과시는 50%를 산정함.</p> <p>나.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점을 감안하여 실시 기간은 치료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. 다만, 대상포진후통증, 척추수술실패후통증, 신경병증성 통증(neuropathic pain), 척추손상후통증,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.</p> <p>다.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 횟수를 합산함.</p> <p>라.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,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%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%를 산정하며, 횟수는 1회로 산정함. 다만,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술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금액만 인정함. (예: Saphenous N/B과 동시에 Articular branch block of Saphenous nerve).</p>	<p>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,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,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산정횟수 및 기간</p> <p>1)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~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%, 15회를 초과시는 50%를 산정함. (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)</p> <p>2)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 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. 다만, 대상포진후통증, 척추수술실패후통증, 신경병증성 통증(neuropathic pain), 척추손상후통증,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.</p> <p>3)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 횟수를 합산함.</p> <p>4) 상기 1)에도 불구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. 다만, 바25자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-후지내측지와 바25차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-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.</p> <p>나. 수가 산정방법</p> <p>1)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,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%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며, 횟수는 1회로 산정함. 다만,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함. <삭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보건복지부고시 제제2022 - 128호.2022.07.01 시행</p>

1.1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변경건

변경전	변경후																							
<p>2. 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흉부의 통증 등에 실시하는 늑간 신경차단술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Level별로 산정하되, 동시에 2 Level이상의 늑간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%, 제2 level 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로 하여 최대 200%까지 산정하며, 좌. 우 양측 동시 실시시에는 각각 산정함. <p>3.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 관절지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재신경(Saphenous Nerve) 및 복재신경관절지(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)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(Peripheral Branch Nerve)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 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(대퇴신경)소정점수의 50%, 발목 아래는 바24거 소정점수의 25%로 산정함. <p>바25 척수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산정방법</p> <p>다음과 같이 산정하되, 경추(Cervical)와 요추(Lumbar)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분절(level) 적용 차단술</p> <p>1) 해당항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택적 신경근,척추후근신경절,척수회백신경교통지, 후지내측지,추간관절차단 <p>2) 수가 산정방법</p> <p>가) 편측 실시 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00%를 산정하고, 제2분절(level)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(level)까지 산정(최대 200%) <p>나) 양측 실시 시(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50% (100% +50%), 제2분절(level)부터는 좌. 우 각 50%를 산정하되,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% 까지 산정 <p>나. 분절(level) 미적용 차단술</p> <p>1) 해당항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신경총, 방척추신경, 미골신경, 요천골신경총(Psoas compartment block포함), 천장관절(Sacro-iliac joint), 척수신경 후지 <p>2) 수가 산정방법</p> <p>가) 편측 실시 시 - 소정점수의 100% 산정</p> <p>나) 양측 실시 시 - 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 산정</p>	<p>(2)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-늑간신경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분절(level)별로 산정하되, 동시에 2분절(level) 이상의 늑간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00%, 제2분절(level)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로 하여 최대 200% 까지 산정하며, 좌우 양측 동시 실시 시에는 각각 산정함.</p> <p>(3) 대퇴신경, 좌골신경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부위에 따라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해당 신경에 따라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-대퇴신경 또는 바24 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-좌골신경 소정점수의 50%, 발목아래는 바24거 또는 바24파 소정점수의 25%를 산정함.</p> <p>나) 바25 척수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: 각 분류항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, (1) 분절(level) 적용 및 (2) 분절(level)미적용신경차단술은 경추, 흉추, 요천추 부위로 구분하여 산정함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구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세부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 text-align: center;">(1) 분절 적용 차단술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항목</td> <td>선택적 신경근, 척추후근신경절, 척수회백신경교통지, 후지내측지, 추간관절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편측</td> <td>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00%를 산정하고, 제2분절(level)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(level)까지 산정(최대200%)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양측 (또는 편측, 양측 동시)</td> <td>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,제2분절(level)부터는 좌우 각 50%를 산정하되,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%까지 산정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 text-align: center;">(2) 분절 미적용 차단술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항목</td> <td>경신경총, 방척추신경, 미골신경, 요천골신경총(Psoas Compartment 포함),천장관절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편측</td> <td>소정점수의 100% 산정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양측</td> <td>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산정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 text-align: center;">(3) 분절· 부위 미적용 차단술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항목</td> <td>척수신경 후지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편측</td> <td>소정점수의 100% 산정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양측</td> <td>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산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다)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</p> <p>(1) 흉부,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, 인접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00%, 제2 분절(level)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로 하여 최대 200% 까지 산정함.</p> <p>(2)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양측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는 바26나(3)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-복잡한 것-복강신경총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.</p>	구분	세부내용	(1) 분절 적용 차단술	항목	선택적 신경근, 척추후근신경절, 척수회백신경교통지, 후지내측지, 추간관절	편측	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00%를 산정하고, 제2분절(level)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(level)까지 산정(최대200%)	양측 (또는 편측, 양측 동시)	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,제2분절(level)부터는 좌우 각 50%를 산정하되,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%까지 산정	(2) 분절 미적용 차단술	항목	경신경총, 방척추신경, 미골신경, 요천골신경총(Psoas Compartment 포함),천장관절	편측	소정점수의 100% 산정	양측	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산정	(3) 분절· 부위 미적용 차단술	항목	척수신경 후지	편측	소정점수의 100% 산정	양측	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산정
구분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
(1) 분절 적용 차단술	항목	선택적 신경근, 척추후근신경절, 척수회백신경교통지, 후지내측지, 추간관절																						
	편측	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00%를 산정하고, 제2분절(level)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(level)까지 산정(최대200%)																						
	양측 (또는 편측, 양측 동시)	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,제2분절(level)부터는 좌우 각 50%를 산정하되,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%까지 산정																						
(2) 분절 미적용 차단술	항목	경신경총, 방척추신경, 미골신경, 요천골신경총(Psoas Compartment 포함),천장관절																						
	편측	소정점수의 100% 산정																						
	양측	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산정																						
(3) 분절· 부위 미적용 차단술	항목	척수신경 후지																						
	편측	소정점수의 100% 산정																						
	양측	소정점수의 150%(100%+50%)산정																						
<p>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</p> <p>1.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을 흉부,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, 근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 Level 은 소정점수의 100%, 제2 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로 하여 최대 200%까지 산정함.</p> <p>2.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에는 바26나(3)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(복잡한 것-복강신경총)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.</p>	<p>다)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</p> <p>(1) 흉부,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, 인접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분절(level)은 소정점수의 100%, 제2 분절(level)부터는 소정점수의 50%로 하여 최대 200% 까지 산정함.</p> <p>(2)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양측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는 바26나(3)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-복잡한 것-복강신경총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.</p>																							

1.1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변경건

변경전	변경후
<p>바24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</p> <p>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같이 준용하여 산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수지신경차단술(Digital Nerve Block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24사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(액와 하부신경) 소정점수 <p>나. 교감신경국소차단술 (IRSB: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1나 정맥마취(부위마취) 소정점수 	<p>다.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어 있지않은 신경차단술은 아래와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1) 수지신경차단술(Digital Nerve Block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24사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-액와 하부신경 소정점수를 산정하되, 부위를 불문하고 편측은 100%, 양측은 200%를 산정함. <p>2) 족지신경차단술(Digital Nerve Block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24파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-좌골신경 소정점수의 25%를 산정하며, 편측당 최대 100%를 산정함 <p>3) 교감신경 국소차단술(IRSB: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1나 정맥마취-부위(국소)마취 소정 점수를 산정함. <p>4) 천장관절 신경차단술(Sacroiliac Joint Block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25차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-추간관절의 소정점수를 산정함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28호.2022.07.01 시행]</p>

1.2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변경건

- ✓ C-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영상 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 되었으며, 필요한 영상과 조영제 사용에 대해 세부적용 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.

변경전	변경후
<p>C-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으며, 동 신경차단술을 C-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바22 관련 -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block)</p> <p>나. 바23 관련 - 삼차신경절(trigeminal ganglion), 상악신경(Maxillary nerve),하악신경(Mandibular nerve), 익구개신경절(Pterygopalatine ganglion)</p> <p>다. 바24 관련 - 상박신경총신경차단술(Brachial plexus block) (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)</p> <p>라. 바25 관련 -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(Facet joint), - 천장관절(Sacro-iliac joint) - 방척추신경근(Paravertebral spinal nerve root), -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 (Dorsal root ganglion block) -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(Post. medial branch block), - 척추신경근(Spinal root block)(Psoas compartment block : blind block도 가능)</p> <p>마. 바26나 관련 - 흉요부교감신경절(thoracolumbar sympathetic ganglion), - 복강신경총(celiac plexus), - 하장간막신경총(Inferior mesenteric plexus), - 상하복신경총(Superior hypogastric plexus)</p>	<p>1. C-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 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동 신경차단술을 C-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가.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 -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Block)</p> <p>나.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- 삼차신경절(Trigeminal Ganglion), 상악신경(Maxillary Nerve),하악신경(Mandibular Nerve), 접구개신경절 (Sphenopalatine Ganglion)</p> <p>다.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- 상박신경총(Brachial Plexus -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)</p> <p>라. 바25 척수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- 추간관절(Facet Joint) - 천장관절(Sacroiliac Joint) - 방척추신경(Paravertebral Nerve), - 척추후근신경절(Dorsal Root Ganglion), - 후지내측지(Posterior Medial Branch), - 선택적 신경근(Selective Spinal Nerve Root) - 척수회백신경교통지(Gray Rami Communicans), - 요천골신경총(Lumbar or Sacral Plexus)</p> <p>마. 바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- 흉부교감신경절 (Thoracic Sympathetic Ganglion), - 요부교감신경절 (Lumbar Sympathetic Ganglion) - 복강신경총(Celiac Plexus) - 하장간막신경 (Inferior Mesenteric Plexus), - 상하복신경총(Superior Hypogastric Plexus) - 외톨이신경절(Ganglion Impar)</p> <p>2. 세부적용기준</p> <p>가.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, 측면상,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. 다만,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가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함. 1) 후지내측지, 추간관절 가)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 나) 요천추는 (1)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(2) 경사상과 측면상 2) 경추간공경막외신경, 척수회백신경교통지 : 정면상과 측면상</p> <p>나. 경추간공경막외신경, 선택적 신경근, 척추후근신경절, 척수회백신경교통지, 요천골신경총, 추간관절,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.</p> <p>다. 상기 가 또는 나 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28호.2022.07.01 시행]</p>

1.3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신설건

✓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한 경우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.

변경된 보험급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?

세부 인정 기준

1.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(경막외 주입, 정맥내 주입,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)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에 실시한 경우 통증자가조절법만 요양급여로 인정함.
2. 상기 1.에도 불구하고 바2가(1)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, 바2가(2)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하에 실시한 다음의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인정하되, 신경차단술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초일에 한하여 1회 인정함.

- 다 음 -

가. 암관련 수술 후 통증

나.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

다.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28호.2022.07.01 시행]

1.4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주요 Q&A

연번	질 의	답 변
1	신경차단술 시 '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'에서 2개월의 시작 시기는?	○ 신경차단술의 치료기간 산정은 최초 실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개월을 산정함
2	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 등으로 진료 종료 후 재내원 시 신경차단술 산정방법은?	○ 신경차단술 후 증상의 호전 등으로 진료를 종료하였다가 증상 발생 등으로 종료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따라 횟수, 기간,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
3	신경차단술을 1개월에 3회 이하로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당 2개월까지 산정해야 하는지?	○ 신경차단술을 동일상병에 1개월에 3회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여도 인정하며,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%, 15회 초과 시는 50%를 산정함
4	바25 척수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경우 경추-흉추, 흉추-요추 인접 부위에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은?	○ 바25 척수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경우 (1) 분절 적용 차단술 및 (2) 분절 미적용 차단술을 경추-흉추 또는 흉추-요추 인접(이행부)에 시행한 경우에는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하나의 척추 부위에 산정함

※ 관련근거 - 보건복지부고시 제제2022 - 128호.2022.07.01 시행